

화순읍도시계획변경결정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6. 5

다. 상 정 일 자 : 2003. 6. 5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나. 제안사유

- 만연로변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덕지구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하여 주차장 시설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문화공간시설을 확보하여 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주차장 시설(변경)결정 사유서

| 도면표지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1 | 광덕지하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덕 지하주차장 신설 • 면적 : 6,375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지역은 아파트 상가가 밀집되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하여 문화시설부지 지하에 지하주차장시설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함. |
| 2 | 공영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시설 신설 • 면적 : 2,670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연로(중로1-2호선)변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만연로 일원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함.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본 변경안은 화순읍 향청리 103-1번지의 8필지 공용 주차장과 만연리 219번지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은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백지화하도록 의결하였던 내용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계류”

7. 첨부 : 화순읍도시계획변경결정안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1. 변경사유

- 만연로변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덕지구내 많은 주민이거주하고 있으나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하여 주차장시설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문화공간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용

1) 주차장시설 (변경)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m ²) | | | 최종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1 | 지하주차장 | 만연리219번지 | - | 증)6,375 | 6,375 | |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
| 신설 | 2 | 공영주차장 | 함청리 103-1 번지의 8필지 | - | 증)2,670 | 2,670 | | |

2) 주차장시설 (변경)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1 | 광덕 지하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덕 지하주차장 신설 • 면적 : 6,375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지역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하여 문화시설부지 지하에 지하주차장시설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함 |
| 2 | 공영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시설 신설 • 면적 : 2,670m²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연로(종로 1-2호선)번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만연로 일원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함 |

3. 관련법령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